

청주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0가단331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

담당변호사 공락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

담당변호사 최한겨레, 정해린

변 론 종 결 2021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2. 1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에 관한 2020. 1. 14.자 명의신탁약정은 45,625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5,62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. 10. 16. 원고에게 ‘원고의 전 배우자 D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조로 2019. 11. 16.까지 1억 5,000만 원 및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5513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2020. 6. 19. ‘C은 원고에게 1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.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나13411호로 항소하였고, 항소심은 2021. 6. 24.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‘C은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는 2019. 10. 9. E와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4,800만 원에 매수하되, 계약금 2,480만 원은 계약 당일, 중도금 2,520만 원은 2019. 11. 26., 잔금 1억 9,800만 원은 2020. 2. 10.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.

라. 피고는 2020. 1. 14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의 배우자인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추심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, 실제로는

피고와 C이 1/2씩 공유하던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20. 1. 14.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피고 단독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사해행위를 저질렀다.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2020. 1. 14.자 명의신탁 약정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2020. 1. 14.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오히려,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E이고, 피고가 피고의 은행예금과 피고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금 및 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).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2020. 1. 14.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식